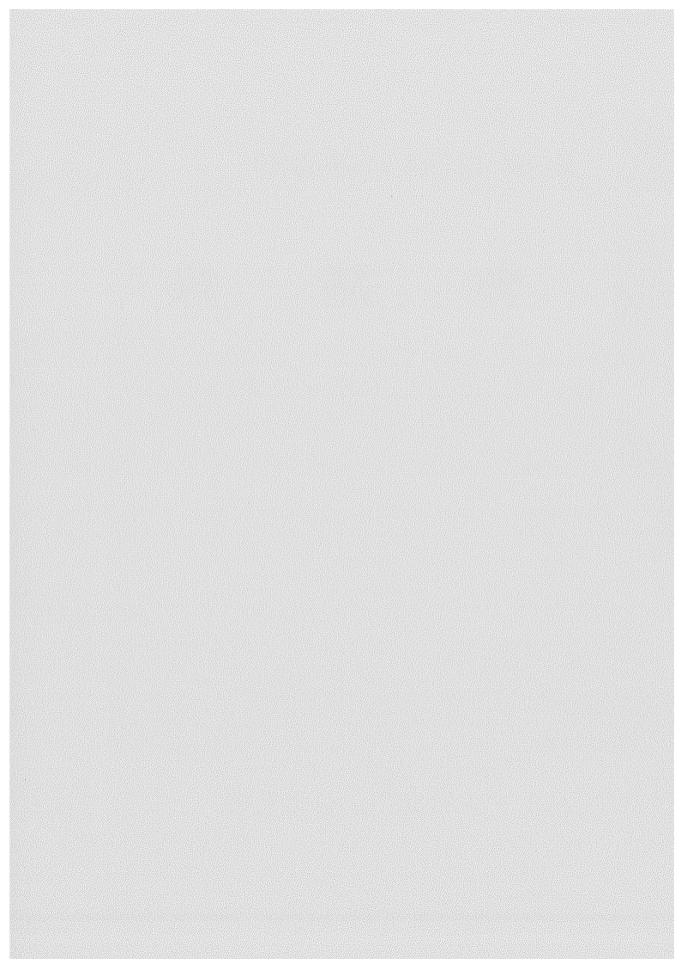
# 第133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議錄

 $(2001.10.8.\sim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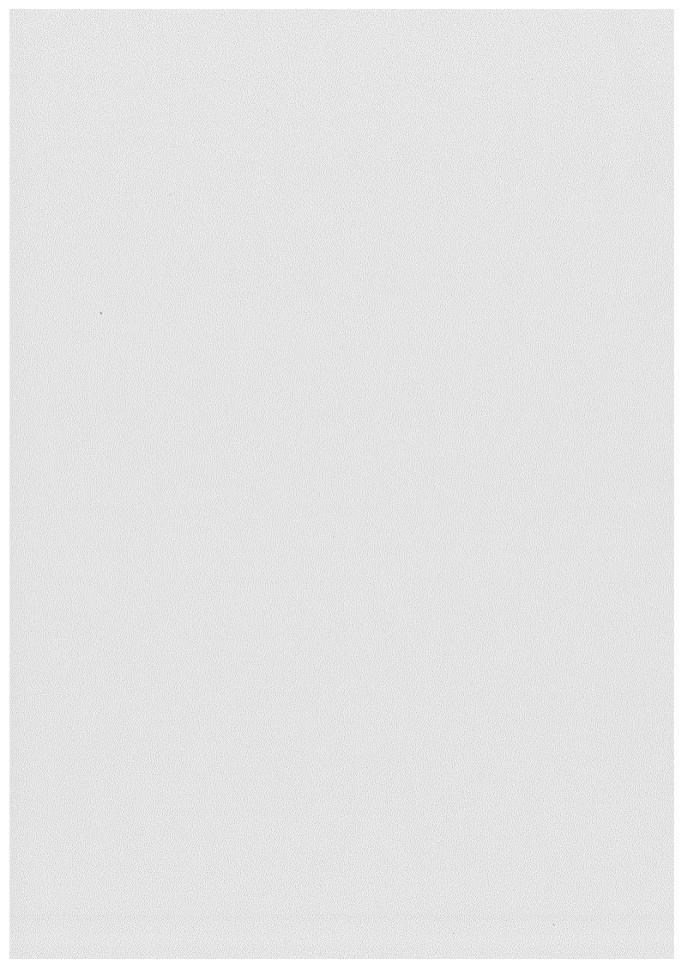
忠淸北道教育委員會



第133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Ι.	개회식20	51
п.	제1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	53
ш.	제1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	5 <b>7</b>
IV.	부록	
1.	의사일정안2	71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2	73

化自己分配 医二氏感染性炎 医多氏性皮肤炎

Part of the second

The second of th

# 本會議會議錄

#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8일 (월요일) 11시 01분

## 開會式順(第133回 臨時會 開會式)

- 1. 개식
- 2. 국기에 대한 경례
-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1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 의사담당 김왕년

지금부터 제1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11시 03분 폐식)

er en kommune blev kommune. De se stande blev kommune blev b

the first of the second section of the second section of the

# 本會議會議錄

#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8일 (월요일) 11시 03분

### 議事日程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 제13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附議된 案件

- 1. 경과보고(의사과장)
- 2. 제13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육감 제출)

(11시 03분 개의)

###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 교육감님과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초 등 및 특수학교 교장회의를 주재하는 관계 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 항입니다.

9월 29일 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같은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수 교육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공고 제2001-10호로 제1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으십니까? 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 ("없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25일 제192 네, 이의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육위원회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9월 25일 제132회 10일까지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1년 다. 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2년도공유재 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제13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

(11시 06분)

####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충청북도 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33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10월 9일은 의안관련 현장방문 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8분)

####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 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 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후, 10월 9일은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0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 노후시설 개축과 학과 개편 및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축으로 남일초등학교 외 2개 ▶ 참 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별 교의 건물 4.530㎡와 공작물 4종을 취득코 자 하며, 제천 의림여중 외 1개교의 운동장 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 소유 부지 7.137㎡와 우리 교육청 소유 재산이 제천시 ● 의장 손만재 소방도로 및 꽃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 천여고 외 1교 부지 1만 1,481㎡를 감정가 격으로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 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첨 2)

(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충 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 원 위원님과 조일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11시 10분 산회)

### 0 출석위원 : 7명

감사합니다.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 0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별첨 2)

in de la composition La composition de la

# 本會議會議錄

#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10일 (수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손만재

###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교육감님과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은 어제 전국체전 관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실업교육과장님은 오늘 장학 협의 관계로 못 나오시고, 시설과장님은 개 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 황을 살펴보신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 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 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1시 03분 폐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3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0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신춘우,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제1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10. .

의 장 손만재

위 원 이 충 원

위 원 조일환

의사국장 김성기 / 사사 )

# 議事日程(案)

第133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1. 10. 8. ~ 10. 10.(3 日間)

Ħ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0月	8日(月)	· <u>-</u>		
(1	1:00)	□開會式		
		[ 第1次 本會議 ]		
		1. 제13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기: 2001. 10. 8. ~ 10. 10.(3 일간)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			
10月	9日(火)	□ 議案關聯 現場訪問	太會診	§ 休會
10,3		C BAX BA 70° 70° 7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个自席	A PI E
10月	10日(水)			
(1	(00:00)			
		[第2次 本會議]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閉會		

	의안병	변호	제 /→-/ 호
Γ	의	결	2001.10.10.
	년 월	일	( 제 😕 회)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 9 . 2001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부서 : 학교운영지원과

제출년월일 : 2001. 9. 2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의안 번호 /¾-/

## □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 주요골자

## 【 공유재산의 취득】

○ 취득 사유 : 노후시설 개축 및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 취득 내역

	건	물	공.	작 물	총추정
학교명	수랑(m')	금액(천원)	수량(종)	금액(천원)	가 액 (천 원)
남일초	2,145	1,359,500			1,359,500
청천중	1,125	737,320	4종	158,300	895,620
충북정보 산 업 고	1,260	970,734	1종	13,750	984,484
계	4,530	3,067,554	4종	172,050	3,239,604

# [ 공유재산의 교환]

○ 교환 사유 : 상호 점유 재산 교환

○ 교환 내역

구분	현 재 사용기관	용도	주 소	필지	지목	치적 (m')	공시지가 (천원)	현 재 소유주
a) E	의림여중	운동장	제천시 하소동 47-1외2	2 1	전 임야	1,600 2,975	224,000 276,675	제천시
취득	제천공고	운동장	봉양읍 팔송리 364-1	1	전	2,562	17,421	제천시
소 계	2 교			4	Y	7,137	518,096	
=1 H	제천시	도로 (제천여고)	제천시 서부동 741	1	도	1,264	216,776	교육감
처 분	제천시	꽃묘장 (홍광초)	제천시 모산동 390의 1	2	전	10,217	306,510	교육감
소 계	1 기관			3		11,481	523,286	
교환차액						4,344	5,190	

# □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덧붙임
-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 설 명 자 료 : 별 책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m'/m, 천원)

	-1		4	<b>4</b> j	7]	타	析	71		1	4
	7	파	건수	수왕	급여	건수	수광	급 액	건수	수왕"	금 역
	계	토지	1	7,137	518,096				1	7,137	518,096
		건물				3	4,530	3,067,554	3	4,530	3,067,554
		기타				2	4종	172,050	2	4종	172,050
취		토지					1 1			,	
	l. 매 입	건물			-					:	
	nl A	기타							· · ·		
	2.	토지	1	7,137	518,096				1	7,137	518,096
	교환 으로	건물							***************************************		
득	おこ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3	4,530	3,067,554	3	4,530	3,067,554
		기타				2	4종	172,050	, <b>2</b>	4종	172,050
		토지	1	11,481	523,286				1	11,481	523,286
	계	건물		1						1	
처		기타									
	4.	토지									
	매 각	건물					4		N. C.		;
		기타		1.				2			
		토지									
	5. 양 역	건물						No. 1, p			
١		기타									
분	6.교환	토지	1	11,481	523,286			V.,	1	11,481	523,286
	으로	건물									
	처분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7-2)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m'/천원)

일원		শ্ৰ	} 2  H	4		추정	취목	科馬	취득계산	
변호	기관명	-	7 분	소계 자	中間	가역	시기	44	소 유 차 주소: 성명	भ्य
			교 실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	1,575	990,500	하반기	교육 <b>환</b> 경 개선	교육감	
1	남일초	건물	계단실, 현관, 출입구	H	360	226,400	<i>n</i>	и .	n	1쪽
			기계실	,	180	113,200	*	,,	*	
			숙직실	*	30	29,400	,	*	,	
	소 계		건물계		2,145	1,359,500				
		건물	교 실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5	855	567,520	하반기	7차교육 과정 <b>에</b> 따른 <del>중축</del>	교육감	
		신된	계단실	,	270	169,800	*	,	"	
			건물계	,	1,125	737,320	*	"	"	
2	청천중		담 장	,	150	52,500	#	"	r	2쪽
2			배수로	,	400	56,000	,	,	"	
		공작물	포 장		600	33,000	,		,	
			교 문		1 식	16,800	"	•	"	
			공작물계		4종	158,300			1,	
	소	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895,620			15 1	
		-1 5	교 실	청주시 율량동 1496	1,080	854,734	하반기	7차교육 과정에 따른 <del>중축</del>	교육감	
	충북정 보산업	건 물	계단실	,	180	116,000	"	,,	"	3쪽
	고		건물계	,	1,260	970,734	"	,	"	
		공작물	포 장	*	250	13,750	"	*	,	
	소	.계			1,510	984,484				
		토지								
계	3 교	건 물		N	4,530	3,067,554				
		공작물			4중	172,050				

# 교환대상 재산목록(7-3)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m'/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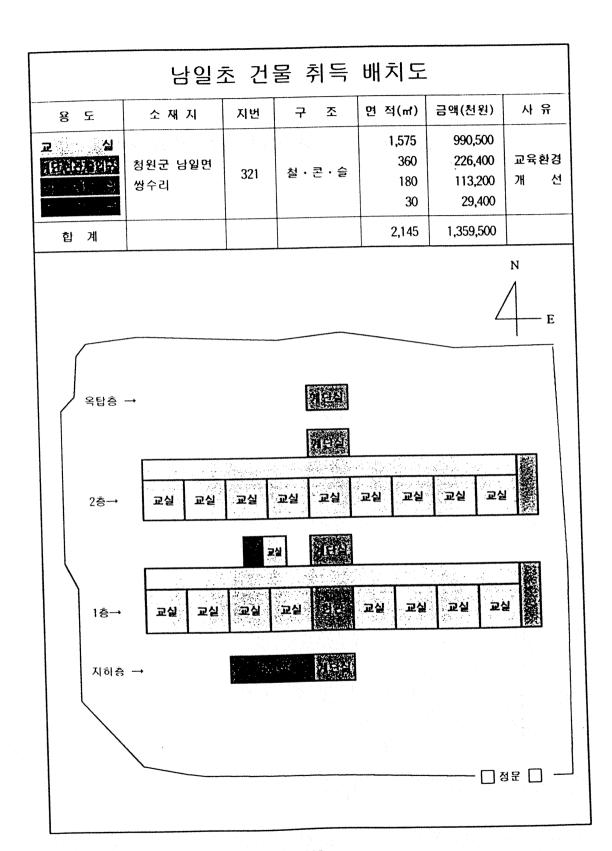
일번		계	산의 표시		亚老	추정	亚色		교 환	
변호	구 분	지목	소 계 기	일단의 수 량	대상 수량	가역	시기	교환 사유	대상자	체고
1	취득	전	제천시 하소동 47-1	645	645	90,300	상반기	의림여중 부지로 점유	제천시장	4쪽
	"	전	제천시 하소동 102-1	955	955	133,700	,,	<b>//</b>	H	*
	n	임야	제천시 하소동 산 13-5	2,975	2,975	276,675	<b>,</b>	,	N	H
	*	전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64-1	2,562	2,562	17,421	, ,	제천공고 부지로 점유	제천시장	5쪽
		소계	\(\frac{1}{4}\)	7,137	7,137	518,096				
2	처 분	전	제천시 모산동 390	3,624	3,624	108,720	상반기	제천시에 무상임대	제천시장	6쪽
	M	전	제천시 모산동 390-8	6,593	6,593	197,790	*	# *		<i>H</i>
	7	도로	제천시 서부동 741	1,264	1,264	216,776	*	제천시에서 도로로 점유	제천시장	7쪽
		소계		11,481	11,481	523,286				
	_	취득	4 필지	7,137	7,137	518,096	5			
계	토지	치분	3 필지	11,481	11,481	523,286	8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 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로 한다.
  -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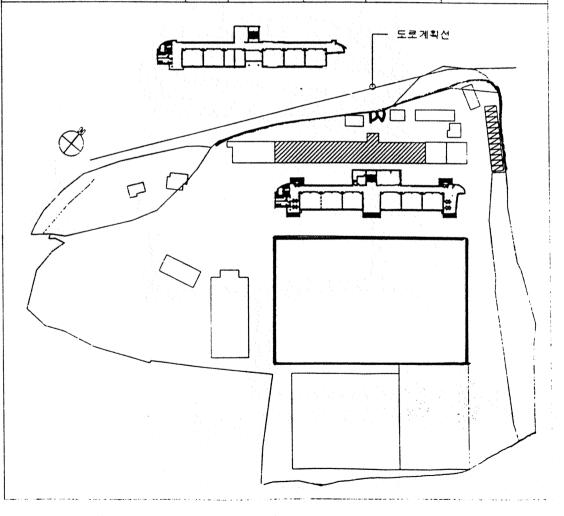
-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올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8.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 득·처분
-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제 1 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제34 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 명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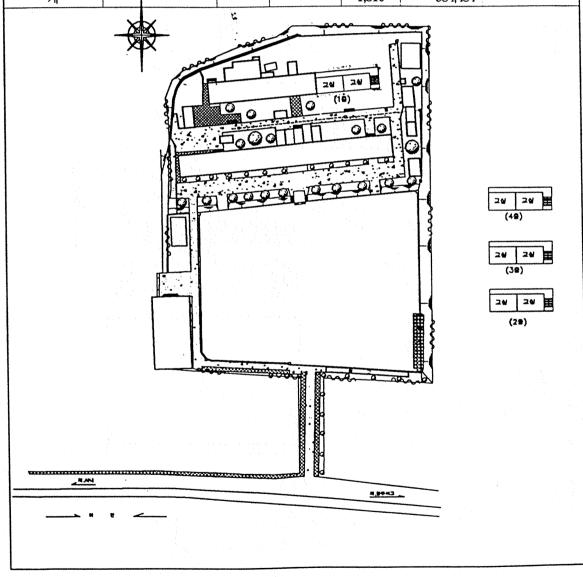
# 괴산 청천중학교 건물 및 공작물 취득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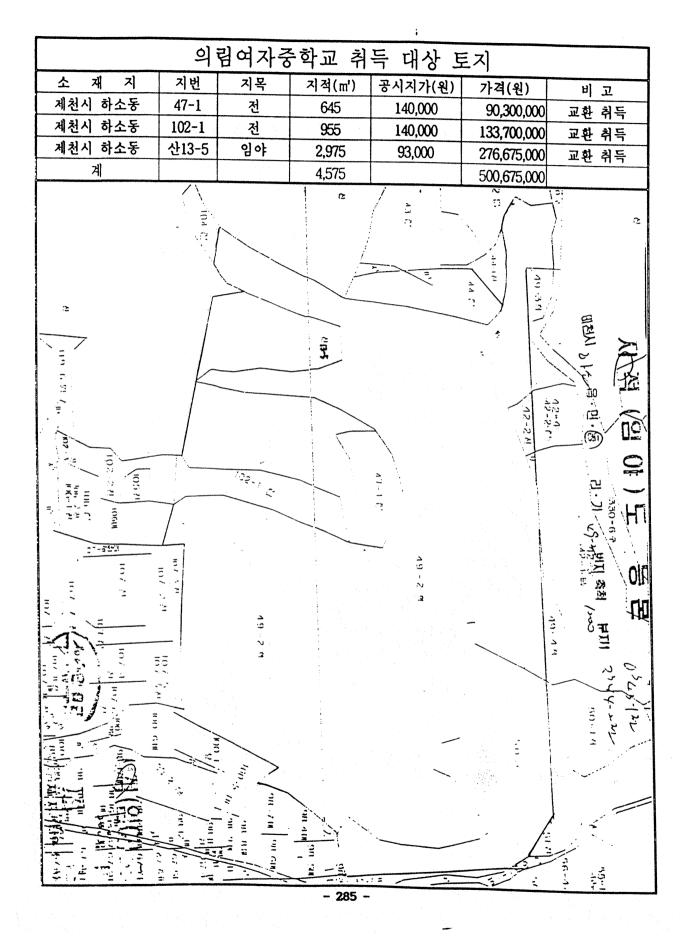
용	도		소 자	기	지번	구 조	면적 (m'/m)	금액(천원)	사 유 ·
① ii		실	angle for each annual state of the control of the c	***************************************		철콘슬	855	567,520	
②계	단	실				철콘슬	270	169,800	
●담		장	괴산군	청천면	155	투시형	150	52,500	7차교육과정에
바	수	로	선평리		133	철・콘	400	56,000	따른 증축
<b>⑤</b> ¥		장				철・콘	600	33,000	
■ II		문				철・콘	1식	16,800	
	계							895,620	



# 충북정보산업고등학교 건물 및 공작물 취득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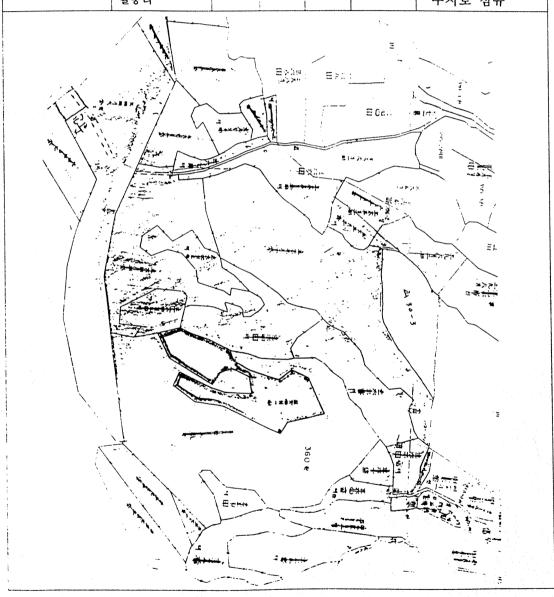
용도	소 재 지	지번	구 조	면 적 (m')	취득금액 (천원)	사 유
①교 실	청주시 상당구	1496	철·콘·슬	1,080	854,734	제7차교육과정에
②계단실	율량동	vicandalistica de la constanta	철·콘·슬	180	116,000	따른증축
③포장	- '	<u>.</u>	철・콘	250	13,750	in the state of th
계		i		1,510	984,4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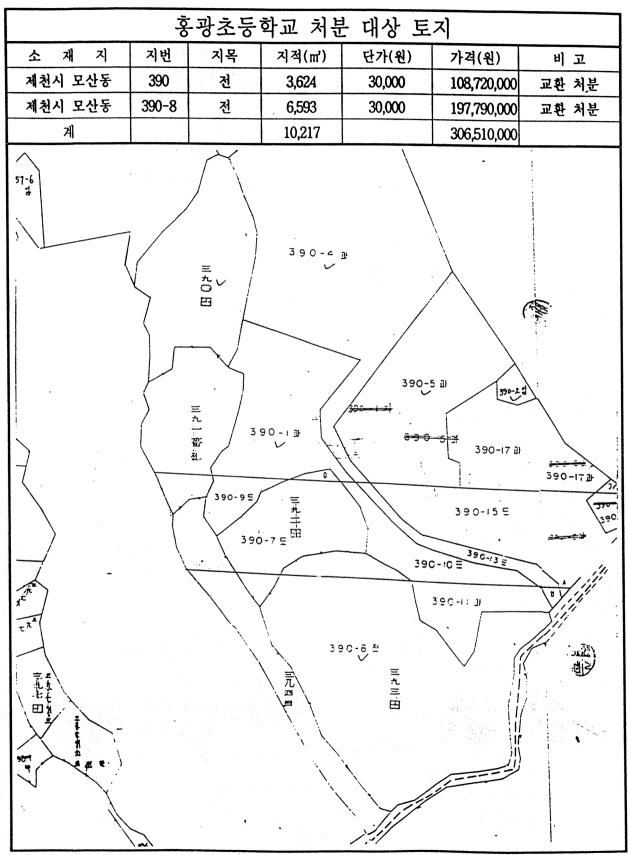




# 제천공고 토지 교환(취득) 배치도

용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m')	취득금액 (천원)	사 유
학교용지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64-1	전	2,562	17,421	제천공고 부지로 점유





# 제천여고 토지 교환(처분) 배치도 처분금액 면적 지목 사 소 재 지 지번 유 도 용 $(m^i)$ (천원) 제천시에서 1,264 216,776 제천시 서부동 로 741 도 도 도로로 점유 430 B 282 E